

3.1.22 고충처리위원회규정

제정 2010. 10. 21.

개정 2018. 07. 26.

개정 2022. 06. 09.

제1조(목적) 이 위원회는 교수, 직원, 학생이 교육현장과 업무 수행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 및 고충을 청취하고,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인 학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(명칭) 이 위원회의 명칭은 고충처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8.07.26., 2022.06.09.>

1. 위원장은 교무부총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된다. <개정 2018.07.26., 2022.06.09.>
2. 위원은 교무처장, 기획연구처장, 사무처장, 교무과장, 총무과장이 된다. <개정 2018.07.26., 2022.06.09.>
3.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며,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8.07.26.>
4.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8.07.26.>
5.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18.07.26.>

제4조(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기능) 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교수·직원·학생의 고충과 갈등해소에 대한 사항
2. 위 사항에 대한 조정결과를 건의하여 처리하는 사항

제6조(회의개최 등) ① 회의는 고충처리의 신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.

② 갈등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

③ 회의의 소집 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인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조(당사자의 진술청취)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회의에 출석케 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출석요청)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의사 등의 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갈등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.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다만, 위원 3인 이상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당해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제11조(처리결과의 통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갈등 사안 중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교원인사위원회, 교원징계위원회, 직원인사위원회, 학생징계위원회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갈등 사안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총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2조(회의록 작성 등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이 서명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분쟁관련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3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.